

비교과교육과정운영및성과관리규정

5-1-55

규정번호 5-1-55
제정일자 2020.3.30
최근개정 2026.5.18
개정차수 10차 개정
관리부서 AI·IR팀

[규정명칭 변경 및 전면개정 2024.7.24.]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명지전문대학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설립이념, 인재상 및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학생역량 강화를 위한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비교과 교육과정의 정의 및 분류) 비교과 교육과정은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하며 비교과 프로그램을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

1.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: 학생들의 학습역량(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언어능력, 외국어능력, 사고능력, 수리능력, 학습매체 활용능력 등과 학습동기를 포괄함)을 강화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진단(평가), 학습상담·컨설팅, 멘토링, 튜터링, 클리닉, 특강, 워크숍, 공모전, 그룹활동, 전시활동, 체험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
2. 진로지원 프로그램 : 학생들의 진로 체험 및 탐색 등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진로상담, 캠프, 특강, 공모전, 직업 및 직무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
3.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 : 학생들의 심리적 건강과 대인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자신감 회복, 문제점 해결 등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상담, 심리검사, 집단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상담 지원 프로그램
4. 취업지원 프로그램 : 학생들의 취업을 통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업상담, 이력서·자기소개서 작성, 자격증 강좌, 특강, 직업(직장)체험프로그램, 모의면접, 현장학습 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프로그램
5. 창업지원 프로그램 : 학생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창업보육센터 입주 지원, 창업동아리 운영지원, 재정적 지원, 창업 특강, 창업교육, 모의창업, 창업 경진대회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
6. 산학연계 프로그램 : 학생과 산업체의 연계활동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비교과 캡스톤 디자인, 산업체 연계교육, 특강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
7. 역량기반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: 전공 및 기초 교양교육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전공 및 핵심역량을 심화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
8. 기타 프로그램 : 비교과 교육과정 중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프로그램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5-1-55 비교과교육과정운영및성과관리규정

제 3 조(범위) 이 규정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에 적용한다.

제4조(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 및 성과 관리)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.

1. 대학혁신본부 AI·IR센터(개정 2026.5.18.)

가.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 및 성과 관리 계획 수립

나. <삭제(2026.5.18.)>

다. 핵심역량 및 비교과 프로그램 인증제 관리

라. 비교과 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

2. 교목실 선교지원팀

가. 인성교육 및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사전조사, 지원

나. 인성교육 및 사회봉사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관리 등

3. 교무처 교육과정혁신팀

가. 전공 교과목 연계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

나. 전공역량 강화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관리 등

4. 산학협력처 산학협력팀(산학시융합지원센터)(개정 2026.2.6.)

가. 산업체와의 현장 밀착형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

나. 진로·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 및 성과 관리 등

5. 교수학습센터 교수학습팀

가.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, 학습역량 진단 등

나.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관리 등

6. 학생지원처 취·창업팀(개정 2026.2.6.)

가. 경력개발 및 취·창업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, 진로역량 개발, 지원(개정 2026.2.6.)

나. 취·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, 취업역량 개발, 지원

다. 취·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관리(개정 2026.2.6.)

라. 스마트케어 학생역량이력관리시스템 관리운영 등

7. 학술정보원 학술정보팀

가.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도서관 이용 및 독서 장려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, 핵심역량 개발, 지원

나. 각종 도서관 이용교육, 독서장려, 비교과 온라인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관리 등

8. 글로벌교육센터 글로벌교육팀

가.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글로벌 역량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, 핵심역량 개발, 지원

나. 어학교육을 지원하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인턴십, 연수, 어학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관리 등

9. 상담센터 상담지원팀

가. 개인 및 집단 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대인관계 강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전조사

나. 각종 심리검사, 학생 요구조사, 상담교육훈련 및 예방교육 운영 및 성과 관리 등

10. 기타

가.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교내 기관에서도 핵심역량을 비롯한 다양한 역량 개발 및 제고시킬 수 있는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
나. 해당 기관장은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 계획 및 결과는 반드시 내부결재 후 AI·IR센터에 전달하여야 한다.(개정 2026.2.6.)

제 5 조(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원칙) 역량강화 비교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.

1. 비교과 교육과정 개발 또는 개선, 폐지 시 사전조사, 진단 및 분석 결과에 따른 PDCA 진행
2. 비교과 교육과정의 역량 향상도 및 만족도 등을 포함한 성과분석
3. 역량 진단을 통한 수준별 최적의 프로그램 제공
4. 교과과정의 보완을 위한 연계성 강화 노력
5. 취약계층 및 소수 학습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

제6조(비교과 교육과정 성과분석) ① 모든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는 매년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AI·IR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26.2.6.)

② AI·IR센터는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성과분석보고서를 기반으로 비교과 프로그램 인증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(개정 2026.2.6., 2026.3.23.)

③ 비교과 프로그램 인증 결과는 각 부서에 안내하여 차년도 운영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한다.

제7조(비교과교육과정성과관리위원회) <삭제(2026.3.23.)>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5-1-55 비교과교육과정운영및성과관리규정

부 칙(학사내규) <2021.8.18 개정>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직제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2> (생략)

<3> 학생역량강화를위한비교과교육과정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co-op 프로그램”을 “현장실습학기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되,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② (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) <1> - <17> (생략)

<18> 학생역량강화를위한비교과교육과정운영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7호의 "진로취업지원센터"를 "진로취·창업센터"로, 제4조제7호의 "진로취업지원팀"을 "진로취·창업팀"으로, 제7조제3항의 "진로취업지원센터장"을 "진로취·창업센터장"으로 변경한다.

제4조제6호의 "교육혁신지원센터"를 "교수학습센터"로, "교육혁신지원팀"을 "교수학습팀"으로, 제7조제3항의 "교육혁신지원센터장"을 "교수학습센터장"으로 변경한다.

<19> - <25> (생략)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제1호제3호, 제6조제1항제2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규정명 변경 및 전면개정)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제1호·제4호·제6호·제10호, 제6조제1항·제2항, 제7조제2항)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23일부터 시행하되,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(제6조제2항, 제7조)

부 칙

명지전문대학 규정 / 5-1-55 비교과교육과정운영및성과관리규정

이 규정은 2026년 5월 18일부터 시행하되,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(제4조1호나목)